

2.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련교육의 목표 및 수련내용

- ① 분과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 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분과전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수련내용은 표1 수련의 교육을 위한 수련내용과 같다.

표1. 수련의 교육을 위한 수련내용

수련 내용	기 준
연수 교육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 참조)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학술대회 참석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 (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제1발표자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 게재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표3 참조)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
진료내용	1.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00명 이상 3.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교육내용	1. 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가. 신경계 발생 및 해부 나. 신경생리 다. 신경병리 라. 신경약리 마. 발달장애 바. 뇌전증

	사. 근육질환 아. 중추신경계 감염 자. 말초신경질환 차. 신경대사질환 카. 자가면역질환 타. 주산기 신경질환 파. 퇴행성질환 하. 기타 신경관련질환 2. 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 능력 가. 뇌파 나. 뇌영상검사 다. 뇌유발전위검사 라. 근전도 마. 신경전도검사 바. 안저검사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가. 신경진찰 나. 발달검사 다. 요추천자 라. 경막하천자 마. 근육 및 신경 생검 5. 인성교육
--	---

[제3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③ 분과지도전문의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분과지도전문의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분과지도전문의 부재기간이 3-6개월 : 분과지도전문의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분과지도전문의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분과지도전문의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각 연차별 전임의의 정원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분과지도전문의수 + 1로 한다.
- ②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반도록 한다.

[제5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수련기록의 작성 및 보관

- 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분과지도전문의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해당 전임의의 수련 시작일로부터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분과지도전문의 및 전임의 상황보고

- 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분과지도전문의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분과지도전문의 명부
- ②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분과지도전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임의는 수련 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동시에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9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의 분과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분과지도전문의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인정 기준에 적합

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 ④ 수련병원은 3차 의료기관 또는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으로 1명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분과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제10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①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될 때
- ② 분과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3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